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(대관령점)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154

제안연월일 : 2023. 8.

제 안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도모.
-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대관령면에 설치함에 따라「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근거하여 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

○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(대관령점)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-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
 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 및 제21조의2
 - 「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제5조
- 추진 필요성
 -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감소 및 지역 내 아동 안전·보호 체계 구축
 -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활용,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.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위탁범위 : 다함께돌봄센터(대관령점) 운영 및 관리 전반
- 사무내용
 - 이용 아동에 대한 상시·일시 돌봄서비스 제공
 -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
 -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 관리
 - 그 밖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
- 인력운영 : 센터장 1, 팀원(시간제) 1~2명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위 치 :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43-19 (舊대관령유치원)
- 시설규모 : 연면적 127m², 지상1층 (※정원 20명)
- 구 조 : 놀이공간, 활동실, 사무실, 조리실, 화장실 등

※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(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2)

- 입지조건
 - 지역 내 공적 돌봄서비스 현황 및 연계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함 *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: 4개소 (평창읍, 대화면, 봉평면, 진부면)
 - 이용 아동의 안전 및 학교 또는 집을 기준으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
- 규 모 : 전용면적 66 m² 이상
- 구조 및 설비 :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, 사무공간, 화장실 및 조리공간 등

○ 위 치 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

○ 2023. 11. 01. ~ 2028. 10. 31. (5년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(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)
- 신청자격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
- 선정기준
 - 수탁자의 사업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수행 능력
 - 신청법인(단체)의 공신력, 전문성 및 의지, 재정운영 책임성 등
 -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민간위탁금 139백만원 (국비 42, 도비 21, 군 76)
 -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(급·간식, 프로그램 운영비, 강사료 등)
 - ※ 매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확보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의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, 공공-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이 요구됨.
 -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격을 갖춘 법인·단체의 위탁운영이 적정함.
-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, 풍부한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이용아동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서비스 제공 가능

○ 향후 전문기관 컨설팅, 종사자 교육, 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,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, 예산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자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추진현황(경과) 및 향후계획
 - 다함께돌봄사업 설치 예산 확정 (70백만원) : 2023. 1. 2.
 - 다함께돌봄센터(대관령점) 무상사용대차 협약체결 : 2023. 4. 17. ※ 소유자 박순옥(대관령면), 사용기간 2023. 7. 1. ~ 2028. 12. 31.
 - 다함께돌봄사업 리모델링 공사 : 2023. 5. ~ 8.
 -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심사 : 2023. 9. ~ 10.
 -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개소 : 2023. 10. ~ 11.
- 관련자료
 - 다함께돌봄센터 대관령점 무상사용대차 협약서 1부
- 관계법령
 - 아동복지법 제44조의2
 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
 -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

관련자료

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대관령점 무상사용대차 및 관리운영 협약서

평창군(이하 "군" 이라 한다)과 박순옥(이하 "소유자"라 한다)은 다함께돌봄센터 대관령점 설치·운영을 위해 아래 표시 공간 및 그 부속시설(이하 "공간 등" 이라 한다)의 무상사용대차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, 신의와 성실로 본 협약을 이행하도록 한다.

[공간 등의 표시]

위 치	황계리 343-19번지
건축규모	지상 1층 127㎡ (※ 도면 별첨)

- 제1조(목적) 이 협약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해 공간 등의 장기 무상사용대차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기 위해 작성한다.
- 제2조(무상사용) ① 공간 등에 대한 소유권은 "소유자"에게 있으며 "소유자"는 공간 등을 다함께돌봄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"군"에 무상으로 제공한다.
 - ② "소유자"는 공간 등을 별첨 설계도면대로 "군"에게 인도하며 "군"과 합의 하여 이 협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공간 등의 인도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사용기간) "군" 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6개월간 공 간 등을 점유·사용할 수 있으며, 위 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"군"과 "소유 자"가 협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연장 및 조정할 수 있다.
- 제4조(용도제한) "군"은 공간 등을 센터 운영 사업만을 위해 점유·사용해야 하며 그 관리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.



- 제5조(유지관리 및 보수의무) ① "군"은 공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센터 운영과 관계없이 공간 등의 자체 하자로 인해 발생한 수리 및 유지비용은 "소유자"가 부담하여야 한다. 단, "군"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간 등이 파손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"소유자"는 이에 대한 원 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"군"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③ "군"이 공간 등의 원시적 하자와 상판없는 센터 운영상의 부주의로 제3자에 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"군"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제6조(간선시설의 사용 및 관리비 등의 납부) ① "군"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기, 수도 등 간선시설 및 부대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 "소유자"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, 증설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"군"은 별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"군" 온 센터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시설관리비를 성실히 남부한다.
- - 1. 공간 내 부대, 복리시설 및 조경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 - 2. 공간 내 구조물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 또는 훼손하는 행위
 - 3. 공간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
- 제8조(운영 등) "군"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직영 운영 또는 별도의 운영자(이하 "수탁 운영자"라 한다)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"군"과 "소유자"가 체 결한 협약서는 "수탁운영자"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"군"과 "수탁운 영자"의 계약내용에 명기하여야 한다.
- 제9조(해지) ① "군"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"소유자" 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
 - 2. "군"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② "소유자"는 협약이 해지될 때에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 청 구 등을 할 수 없다.



③ "군" 또는 "소유자"가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 도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설의 명도) 다함께돌볼센터 사용기간의 종료 및 협약 해지 시 "군"은 시설을 "소유자"에게 명도 하여야 하며, 기자재는 "군"에서 수거할 수 있다.

제12조(업무위임)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"군"은 "소유자"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

제13조(기타사항) 상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혈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4월 일

협약자 평창군

평창군수 심재국

강원도 평생문 학장읍 군청절 77

9

소유자 박순옥

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2길 19-4



관계법령 발췌

□ 아동복지법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- 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- 3. 등·하교 전후.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- 4. 체험활동 등 교육 · 문화 · 예술 · 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· 제공
- 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-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- ② 시·도지사 및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</u> 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<u>지방자</u> 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 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<u>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</u> <u>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</u> <u>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</u>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
 - 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-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- 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- 2. 위탁계약기간
-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-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-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- 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 -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□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5조(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라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센터는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③ <u>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</u>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 - 2. 「민법」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 - 3. 「협동조합기본법」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 - 4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